

예고번호
2021-49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(안) 예고서

내규제명	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		
소관부서	재정사업실 재정사업부	담당자	손은혜 (☎: 052-703-0753)
예고기간	2021. 05. 24일(월) ~ 2021. 05. 28일(금) (5일간)		
<p>1. 개정 취지</p> <p>○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(고용노동부 고시)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</p> <p>2. 주요 골자</p> <p>가. 융자금 지원신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 제한 대상 확대(안 제14조의2, 제28조의2)</p> <p>1) 산안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이 취소된 자 및 제14조제2항 제6호에 따른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신청제한 근거 마련</p> <p>2) 산안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취소된 자 및 제27조제2항 제6호에 따른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급신청제한 근거 마련</p> <p>3)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완료하기 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제한 근거 마련</p> <p>나.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기준 마련(안 제28조)</p> <p>1)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비율(30~100%) 근거 마련(단, 산안법 제15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환수)</p>			

내규제명	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		
소관부서	재정사업실 재정사업부	담당자	손은혜 (☎: 052-703-0753)
예고기간	2021. 05. 24일(월) ~ 2021. 05. 28일(금) (5일간)		
<p>다. 지원설비의 사후관리기간 적용 제외 대상 확대(안 제41조)</p> <p>1) 지원설비의 소모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 품목은 사후관리기간 적용을 제외토록 근거 마련</p> <p>라. 융자금·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근거 마련(안 제46조)</p> <p>1)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융자금 지원사업장, 보조금 지급사업장, 공급업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요청 및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</p> <p>3. 참고사항</p> <p>○ 첨부 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(안) 내용 참조</p>			

※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의 주요골자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)
- 제출부서(기관)명 또는 제출자 소속·성명 및 개정(안) 대한 의견